

##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사전(청문) 통지 공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의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하고자 사전(청문)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     |                                                       |                               |     |       |              |     |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국유재산(광주우체국 주차장 부지(동구 대인동 28-6) 일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용허가 철회 |                               |     |       |              |     |
| 당사자         | 성 명 | 권**                                                   |                               |     |       |              |     |
|             | 주 소 | 광주 동구 제봉로 213번길 **                                    |                               |     |       |              |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                               |     |       |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                               |     |       |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동법 제37조(청문)                |                               |     |       |              |     |
| 청문 실시       |     | 기관명                                                   | 전남지방<br>우정청                   | 부서명 | 우정계획과 | 담 당 자        | 오은아 |
|             |     | 주 소                                                   | 광주 서구 계수로 41                  |     | 전화번호  | 062-600-4613 |     |
|             |     | 일 시                                                   | 2019년 7월 24일(수) 14:00 ~ 15:00 |     |       |              |     |
|             |     | 장 소                                                   | 전남지방우정청 3층(소회의실)              |     |       |              |     |
|             |     | 주재자                                                   | 소속 및<br>지위                    | 변호사 |       |              |     |
|             |     |                                                       | 성 명                           | 배** |       |              |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동법 제37조(청문)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하여야 한다.

##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